

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. 6. 11 선고 2019가단10937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19. 5. 21.

판결 선고 2019. 6. 11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경주시 C대 268㎡ 중 별지 참고도 표시 6, 7, 4, 5,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'ㄴ' 부분 지상의 시멘트벽돌조 주택 7㎡를 철거하고, 위 'ㄴ' 부분 토지를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

판사강민기

별지